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9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10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10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5
2022-10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15
2022-10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21
2022-10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27
2022-10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37
2022-10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43
2022-10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53
2022-109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	6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행정대집행,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별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자문 신설(안 제3조의2)

- 1) 대상: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 2) 방법: 고문변호사에게 수당 외에 별도 자문료 지급,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특별자문 가능

나. 공무원 소송비용 세부지원기준 등 규칙위임 사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천2백만원 확보(특별자문비용)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26.~10.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u>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u>③</u>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p>	<p><u>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u></p> <p>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p> <p>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u>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p> <p><u>③</u>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정함(안 제2조~제6조)
- 나. 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 다. 고향사랑 기금의 목적, 기금운용관,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932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농협 중앙회 거창군 지부장	1. 의견: 제3조제1항제2호 수정 2. 내용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u>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다목에 이미 포괄적으로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단체를 표시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출의견 미반영
	1. 의견: 제4조제4항 신설 2. 내용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원칙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③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 ④ <u>답례품 구성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전체 답례품의 00% 이상으로 한다.</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답례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결정된 답례품을 기부자가 선택하는 내용으로 특정 분야를 00% 이상으로 정함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1. 의견: 제3항제2호라목 신설 2. 내용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u>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고향사랑기금은 이미 법11조에 사용용도가 정해져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계획, 결산, 성과분석,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전문성을 요하며 특정단체의 대표성만 가지고 위원 자격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음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라.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영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영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

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5. 고향사랑 기부금 계좌 우선 개설 및 예치·관리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3조 답례품, 제8조 기금의 사용목적

나. 비용발생 요인

- 1)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비 지급
- 2)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제도 시행 초기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미정

나. 예상 비용

1) 2022년 제2회 추경: 56,932천원

(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2천원

(나) 홍보비 28,000천원

2) 2023년 이후 예산

(가) 금액 미정

(나) 예산소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홍보비, 답례품 구입비, 배송비, 교육, 워크숍 운영비 등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설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캠핑장 이용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 2 제3호다목)

1) 사용료 기준인원 현실화하여 변경

(가) 캐빈하우스: 5명 ⇒ 4명

(나) 전기데크(5미터×5미터): 6명 ⇒ 4명

2) 일반데크를 전기데크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데크 삭제

3)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5미터×5미터) 사용료 변경

(가) 캐빈하우스: 주중 80,000원 ⇒ 100,000원

(나) 방갈로: 주중 60,000원 ⇒ 80,000원

(다) 전기데크(5미터×5미터)

(1) (현행) 주중 25,000원, 주말·성수기 30,000원

(2) (변경) 주중·주말 30,000원, 성수기 40,000원

4) 신규 전기데크 및 다목적회의실 사용료 기준 신설

(가) 전기데크(6미터×8미터): 주중·주말 40,000원, 성수기 50,000원

(나) 다목적회의실: 시간당 20,000원

나. 사용료 감면 근거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3)

1)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 3) 「지방자치법」 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4명, 최대인원 6명	<u>100,000원</u>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u>80,000원</u>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전기데크 (14개소)	5미터×5미터, 4인용	<u>30,000원</u>	30,000원	<u>40,000원</u>	1) 1시간 초과 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전기데크 (5개소)	6미터×8미터, 4인용	<u>40,000원</u>	<u>40,000원</u>	<u>50,000원</u>	1) 1시간 초과 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다목적 회의실	20인용	<u>시간당 20,000원</u>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아동일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명 요금 부과

다) 장비(텐트, 코펠 등을 말한다) 임대료는 별도

라) 사용 시간 <신 설>

- (1)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 (2) 다목적회의실: 9시부터 21시까지

마) 기간 구분

- (1) 성수기: 7월~8월
- (2)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3)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제8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u></p>	<p><삭 제></p>
<p><u>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위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법례에 맞게 목적조항 변경(안 제1조)

나.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2조)

1)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다. 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4조의2)

라.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제2조·제3조, 제5조~제8조)

1) 인 ⇒ 명,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회무 ⇒ 업무

2) 군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 회의록 작성주체 변경: 위원회 ⇒ 군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문”을 “회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군수”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군수</u>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 위원은 <u>당연직위원</u>과 <u>위촉위원</u>으로 구분하고, <u>당연직위원</u>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u>위촉위원</u>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u>제3조(기능)</u> 위원회는 <u>다음</u>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u>기타</u> 위원장이 <u>자문</u>에 부치는 사항 	<p><u>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u>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 <u>당연직</u>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u>위촉직</u>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u>제3조(기능)</u> 위원회는 <u>다음 각 호</u>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u>그 밖에</u> 위원장이 <u>회의</u>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
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
하는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인용조문 변경

(가) 법 제10조 ⇒ 법 제10조2(안 제5조)

(나) 영 제7조의2 ⇒ 영 제10조의3(안 제6조)

2) 용어 변경

(가)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조·제6조)

(나)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안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9조·제28조·제30조)

(다) 실경작자 ⇒ 농업인(안 제24조)

나. 조례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제5항)

1)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

(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10억, 처분 10억 이상인 재산

(나)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0조의2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0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23.~10.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에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
 -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16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5조 조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2 조 제목,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6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용·수익허가대장”을 “사용허가대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일시사용·수익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p> <p>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u>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u>공유재산의 관리계획</u>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u>관리계획</u>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u>관리계획</u>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p> <p>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u>공유재산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u>공유재산관리계획</u>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u>공유재산관리계획</u>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u>공유재산관리계획</u>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p>

현행	개정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u>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u>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p> <p>② 심의회는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p> <p>1. <u>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p> <p>2. <u>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u></p> <p>3.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u></p> <p>5.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생략)</p> <p>④ <u>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p> <p>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p> <p>⑤·⑥ (생략)</p> <p>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u>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심의회는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p> <p>1. <u>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 <삭 제></p> <p>2.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u></p> <p>3. <u>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u></p> <p>4.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p> <p>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p>

현행	개정안
<p>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p> <p>⑧~⑩ (생략)</p> <p>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수익</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u>사용</u>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u>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u>사용·수익</u>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u>사용·수익</u>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p>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수익</u>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p> <p>①~③ (생략)</p> <p>제16조(사용·수익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u>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수익</u>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u>사용·수익</u>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p>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p> <p>⑧~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u>사용</u>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u>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u>사용</u>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u>사용</u>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p>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u>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용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u>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u>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u>사용</u>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현행	개정안
<p>2.~5.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⑥ (생략)</p> <p>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u>일시사용·수익허가</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6. (생략) ⑥·⑦ (생략)</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u>사용·수익</u>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p>	<p>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u>사용허가</u>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u>일시사용익허가</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허가</u>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농업인</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u>사용</u>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p>

현행	개정안
<p>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② 삭제(2016.12.28.)</p> <p>③~⑦ (생략)</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허가</u>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2022. 8. 1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위임 법령 인용 조문 추가함(안 제1조)

나. 조례로 위임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1) 운영비 종목

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나)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다) 사무시설 임차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2)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

가) 군수가 따로 정함

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다. 법령명 약칭 표현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175,825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8. 3.~8.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8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p>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④ (생략)</p>	<p>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175,825	179,341	182,927	186,585	190,316

3. 관련 의견

거창군체육회 운영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인건비: 139,985천원

1) 사무국장(6급 4호봉) 42,912천원

2) 사무차장(7급 5호봉) 41,578천원

3) 대 리(8급 7호봉) 39,897천원

4) 기타경비 15,598천원

나. 운영비: 35,840천원

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연 2퍼센트 상승 적용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p>1. 제안이유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군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p> <p style="padding-left: 20px;">1)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p> <p>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13조)</p> <p style="padding-left: 20px;">1)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p> <p style="padding-left: 20px;">2) 삭제</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수당, 준용: 개별조례에서 달리 정할 사항이 없으면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하면 됨</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중복·재기재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조례에 정할 필요없음. 법제처 정비대상</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p> <p>나. 예산조치: 2022년도 기금 1,098,307천원 확보</p> <p>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p> <p>라. 기타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입법예고</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예고기간: 2022. 9. 22.~10. 12.</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예고결과: 의견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3) 비용추계서: 불입</p> <p style="padding-left: 20px;">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p>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후단을 삭제하고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조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 제2항) 중 “위원회”를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 제5항)제1호 중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관계자 1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이 있는 사
람”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1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 제6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
제7항) 중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10조·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u>」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p>
<p>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삭 제></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삭 제></p>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신 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삭 제>

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체육진흥기금 용도(사업 또는 활동)

나. 관련 조문: 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 - b)	1,094	1,094	1,094	1,094	1,094	
수입	예치금	1,098	1,094	1,094	1,094	1,094
	이자수입	16	20	20	20	20
	소계(a)	1,114	1,114	1,114	1,114	1,114
지출	사업	20	20	20	20	20
	소계(b)	20	20	20	20	20

3. 관련 의견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우수 선수 육성사업 등에 지원
하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여 운용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수입

1)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0백만원 정도

2) 2023년부터 연 2퍼센트 적용, 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입액은
변동 가능

나. 지출: 우수선수 육성사업 매년 20백만원 집행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8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p>1. 제안이유</p> <p>거창국민체육센터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시설 사용료 및 감경기준을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가. 수시로 변경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안 제3조·제6조·제12조의2)</p> <p>1) 운영시간과 휴무일</p> <p>2)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p> <p>나. 볼링관련 제도 개선 및 신설</p> <p>1) 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신설함(안 제12조의2)</p> <p>2) 볼링장 월 사용 기준 현행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1)</p> <p style="padding-left: 20px;">(현행) 1일 2시간 ⇒ (변경) 1회 4게임</p> <p>3) 볼링화 대여료 신설함(안 별표 1)</p> <p>다. 사용료 감경기준 현행에 맞게 조정(안 별표 2)</p> <p>1) 신설: 감경률 100분의 30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음</p> <p>2) 사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에 따라 차등 징수함에 따라 100분의 30 감경과 같은 효과임</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령</p> <p>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p> <p>2)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p> <p>3)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p>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30.~9.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시설의 개방)”을 “(시설의 개방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및 비고란과 별표 2 100분의 30 및 비고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100분의 50란 제3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설의 개방) <삭제 2021.2.17.> <u><신 설></u></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p>③~④ (생략)</p>	<p>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u>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u></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시간과 휴무일) ① <u>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체육센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u> 나. <u>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u> 다. <u>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u> 2. <u>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u> <p>② <u>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매주 월요일</u> 2. <u>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u> 3. <u>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u> <p>③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u></p>	<p><u><삭 제></u></p>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수영 강습비	10,000원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회 4게임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1회 4게임 1일 2시간
볼링장 사물함	두칸	1개월	1,700			
	세칸		2,500			
<u>볼링화 대</u> <u>여</u>	<u>1회</u>		<u>1,000</u>			<u>어린이 무 료</u>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100분의 30. <u>다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u>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감경기준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3조)

나.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다. 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산업재해 예방활동 적극 시행 사업체에 우수업체 인증

2)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포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지원 등

라.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을 정함(안 제6조)

마.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17. ~9.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한 사업체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이차지원 시 우선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 ① 군수는 군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받은 우수업체 포상
2.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제5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4. 제6조에 따른 강조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 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 및 제5조

나. 발생요인

- 1) 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 2) 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군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3. 관련 의견: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법에 보완적 성격으로
미흡업체 지도, 우수업체 지원이 필요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사업체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2. 컨설팅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정 세 환